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3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임오경·한정애·한민수

박 정·한병도·김현정

서영교 • 이연희 • 임미애

강유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심의 건수는 2021년 2,269건에서 2022년 3,035건,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는 5,050건으로 급증하였음.

특히 2023년 7월에 발생한 서이초 사건은 '교권 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되었음.

이후 교육부는 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학교·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② (생 략)	학생생활지도)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		
	<u>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u>		
	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		
	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